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8. 12. 11 (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 18-105)

2. 제출이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원칙 등(제3조~제5조)
- 아동고려 공공이용시설 설치 및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제6, 7조)
- 아동 건강증진, 아동 교육여가 문화생활(제8, 9조)
- 아동참여 보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영향평가 실시(제10~12조)
-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제13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제14조~22조)
 -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위원의 해촉, 수당 등

※ 조례안은 본칙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9.2)
- 예산조치 : 향후 사업추진 필요예산 확보필요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18.10.18일~'18.11.07)
- 규제사항 유무 : 신설 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권고사항 없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 : 권고사항 반영

5. 검토의견

- 이견 제정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우리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참고자료 1)
-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성북구가 2011년 조례를 제정하는 등 19개구,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남 순천시, 전북 완주군 등 52개 등 전국에 총 72개 시·군·구가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견 조례안은 본칙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례로서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용어와 정의 및 각 조문별 내용 등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와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이견 조례 제정후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해 제출된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단위사업으로 8690만원 편성, 기타 연관사업인 “아동보호 및 권리신장” 정책 사업으로 195억 7667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와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무엇보다, 향후 이견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집행부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 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정신과 취지를 살려 한층 더

향상된 우리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조례 제정후 사업추진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아동복지법 제4조 1매.
2. 서울시 타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사례

[참고 자료 1]

아동복지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0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참 고 자 료 2]

서울시 타구 지방자치단체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사례

[2019.12.7일 현재]

연번	자치구	제정일	개정일	기타 사항
1	종로	2016.11.11	2017.10.13	아동참여위원회 구성(20명)
2	중구	2018.03.07		
3	성동	2016.07.14		
4	광진	2016.12.27		아동참여위원회 구성(30명)
5	동대문	2017.11.16		
6	성북	2011.12.31	2017.12.28	
7	강북	2012.06.22	2018.01.05	음부즈퍼슨 운영
8	도봉	2015.11.12		
9	노원	2016.03.17		
10	은평	2018.07.05		
11	서대문	2017.02.22		
12	양천	2017.10.19	2018. 5.10	아동참여위원회 구성(30명)
13	강서	2016.09.28		아동참여위원회(50명),아동권리지킴이 운영
14	구로	2018.04.05		아동참여위원회(20명),음부즈퍼슨 구성
15	금천	2017.10.13		
16	동작	2013.05.31	2015.12.28	
17	관악	2016.11.03		
18	송파	2015.09.17	2018.04.05	
19	강동	2016.05.04		

※ 서울특별시 2017.01.05일 조례제정 공포